

## 5. 도미니카공화국(Dominican Republic)

### 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적용대상	근로자	근로자	-
보험료율(가입자/사용자)	9.97% (2.87% / 7.1%)	9.97% (2.87% / 7.1%)	-
노령연금 수급요건	가입기간 30년, 60세 (소득활동 중단해야 함)	가입기간 30년, 60세 (소득활동 중단해야 함)	-
노령연금 지급방식	① 물가 연동된 연금 또는 ② 계좌인출 중 선택	① 물가 연동된 연금 또는 ② 계좌인출 중 선택	-
일시금	없음	계좌잔액이 일시금으로 지급	연금을 지급하기에 계좌잔액 부족 시 지급

#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**최초법** : 1947년
- **현행법** : 2001년(사회보장; 2004년 시행). 2005년(납부 면제), 2007년(연체금 해소), 2009년(고용주 부담금 미납금 사면), 2016년(경찰직), 2017년(상업 운전자)

### 2 제도형태

- **의무개인계좌**
  - 민간부문 근로자를 위한 부과방식(pay-as-you-go) 사회보험제도는 2003년부터 신규 가입을 종료하고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있음
    - 2003년 당시 기존 사회보험제도에 남기로 선택한 45세 이상 민간부문 근로자 및 2003년 6월 이전 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한 민간부문 수급권자에게 적용
  - 개인계좌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공공부문 근로자는 공공부문 근로자를 위한 별도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음
    - ※ 자영자 및 기타 취약계층을 위해 보조금이 지원되는 개인계좌제도는 아직 시행 전임
    - ※ 2001년 사회보장법은 사회부조 노령, 장애, 유족연금을 도입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음

## ○ 의무개인계좌

- 당연적용 : 2003년 당시 45세 이하의 민간부문 근로자
- 임의적용 : 도미니카공화국의 해외 거주 국민, 2003년 당시 45세 이상인 공공 및 민간 부문 근로자
- 적용제외 : 자영자
- 특별제도 : 사법부 및 입법부 선출직 또는 임명 공무원,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 직원, 교사, 재무부 특정 직원

## ○ 가입자

- 의무개인계좌 : 소득의 2.87%; 추가 임의납부 가능
  - 가입자와 사용자의 총 보험료 9.97% 중에서;
    - 8%는 개인계좌에 적립
    - 1%는 장애 및 유족보험을 위해 지불
    - 0.5%는 관리.운영 수수료
    - 0.4%는 연대기금
    - 0.07%는 기금운용 감독관청 운영비로 사용됨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소득 : 13,482 pesos(민간부문 근로자 월 평균 최저임금)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: 민간부문 근로자 월 평균 최저임금의 20배

## ○ 자영자

- 의무개인계좌 : 비대상

## ○ 사용자

- 의무개인계좌 : 임금총액의 7.1%; 추가 임의납부 가능
  - 가입자와 사용자의 총 보험료 9.97% 중에서;
    - 8%는 개인계좌로 직접 적립
    - 1%는 장애 및 유족보험을 위해 지불
    - 0.5%는 관리.운영 수수료
    - 0.4%는 연대기금
    - 0.07%는 기금운용 감독관청 운영비로 사용됨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소득 : 13,482 pesos(민간부문 근로자 월 평균 최저임금)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: 민간부문 근로자 월 평균 최저임금의 20배

## ○ 정부

- 의무개인계좌
  - 부분적으로 최저보장연금을 위한 재정 조달; 사용자로서 기여
  - (구)사회보험제도 하에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의 발생된 권리 가치를 재정적으로 지원;

## 5

###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## 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
  - 60세 도달하였으며 3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지급
  - 모든 소득 활동은 중단되어야 함
  - 조기연금 : 최저 노령연금의 150%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적립금이 개인계좌에 있는 경우 55세 때 수급 가능
  - 실직근로자 노령연금 : 57세~59세로 실업 상태이고 최소 25년 이상의 납부기간이 있는 경우 가능(25년 미만인 경우, 가입자는 부분연금을 청구하거나 납부기간이 25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납부할 수 있음)
  - 최저보장연금(연대기금) : 65세 도달자로 25년 이상 납부하였으나 개인계좌 잔액이 최저 노령연금월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지급
  - 최저연금월액은 민간부문 법정최저임금과 동일(9,411.60 pesos, 2017,11월 기준); 공공부문 법정최저임금은 10,000 pesos임
  - 노령연금은 해외 지급 불가

## 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
  - 소득능력의 66.7% 이상 상실로 판정되고 상병급여를 모두 소진한 경우 지급
  - 만성질병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로 인한 장애여야 함
  - 부분장애 : 소득능력 50% ~ 66.7% 미만 상실한 경우 지급
  - 지역의료위원회에서 소득능력 상실정도를 판정함
  - 국가의료위원회에서 지역의료위원회의 판정을 수정, 승인, 거부할 수 있음
  - 해외 지급 가능
- 장애일시금
  - 일시적인 질병으로 진단되었어야 하며 다른 사회보험 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어야 함
  - 지역의료위원회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함. 국가의료위원회에서 지역의료위원회의 판정을 수정, 승인, 거부할 수 있음

## 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
  -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였거나 수급 자격이 있었던 경우 지급

-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
  - 유족배우자(혼인, 동거)
  - 18세 미만 미혼자녀(전업 학생의 경우 21세,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)
- 해외 지급가능
- 유족일시금 : 유족연금을 수급할 유족이 없는 경우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

## 6

### 급여종류별 지급액

#### 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
  - 가입자는 2가지 선택이 가능 ① 물가 연동된 연금 ② 계획된 인출(사회보험제도 하에 적립된 권리 가치는 퇴직 시점에 개인계좌 적립금과 합산됨)
  - 조기연금 : 노령연금과 동일
  - 실직근로자 노령연금 : 노령연금과 동일 방식으로 산정
  - 최저보장연금(연대기금) : 가입자의 계좌잔액과 최저노령연금월액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계좌잔액의 차액을 지급
  - 최저노령연금은 가입자의 근로부문에 따라 민간부문 근로자 월 법정최저임금(9,411.60 pesos, 2017.11월 기준) 또는 공공부문 근로자 월 법정최저임금과 동일(10,000 pesos)
  - 급여조정 : 공공 및 민간부문 근로자 월 법정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조정
- 노령수당
  - 계좌잔액이 최저노령연금월액을 조달하기에 충분한 경우 가입자는 2가지 선택이 가능 : ① 물가 연동된 연금 ② 계획된 인출
  - 계좌잔액 부족 시 계좌잔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됨
  - 최저노령연금은 가입자의 근로부문에 따라 민간부문 근로자 월 법정최저임금(9,411.60 pesos, 2017.11월 기준) 또는 공공부문 근로자 월 법정최저임금과 동일(10,000 pesos)

#### 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
  - 장애발생 직전 3년 간 평균 물가 연동된 가입소득의 60% 지급
  - 장애연금은 퇴직 또는 사망시까지 장애보험회사로부터 재원을 조달받아 지급; 보험회사에서 사망 혹은 퇴직 시까지 개인계좌로 월 보험료 납부
  - 장애연금은 일반퇴직연령 도달 시 가입자가 물가 연동된 연금이나 계획된 인출을 통해 개인계좌적립금을 활용할 경우 정지됨
  - 부분장애 : 장애발생 직전 3년 간 평균 물가 연동된 가입소득의 30% 지급
  - 장애연금 관련 최저, 최대연금액 없음
  - 급여조정 :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
- 장애일시금 : 계좌잔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됨

## ○ 유족급여

### • 유족연금

- 사망자의 직전 3년간 평균 물가 연동된 가입소득의 60% 지급, 사망자의 계좌잔액이 유족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금액 미만인 경우 생명보험에서 사망자 개인계좌 적립금을 충당함
- 55세 이상 유족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평생 지급되며 50~55세의 배우자는 6년간 지급, 50세 미만은 5년간 지급됨
- 고아가 있는 경우, 연금액의 50%가 유족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50%는 수급 자격이 있는 고아 각각 균등 배분됨
- 유족연금 관련 최저, 최대연금액 없음
- 급여조정 :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

## 7

## 관리운영기관

### ○ 국가사회보장위원회(National Social Security Board, CNSS)

- [www.cnss.gov.do](http://www.cnss.gov.do)
- 사회보장제도 전반적 관리 및 정책 개발

### ○ 연금감독국(Superintendent of Pensions, SIPEN)

- [www.sipen.gov.do](http://www.sipen.gov.do)
- 법령시행 감독

### ○ 개인연기금 관리회사(Individual pension fund management companies, AFPs)

- 개인계좌 운영 및 장애·유족보험 관련 보험사들과의 계약 관리

### ○ 사회보장국(Treasury of Social Security)

- <http://www.tss.gov.do/>
- 보험료 징수